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5월 4주차 동향 [5.18.~5.24.]

민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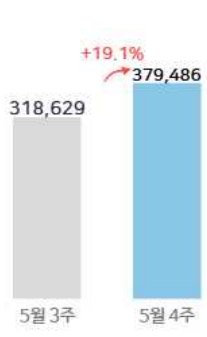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관련 이의신청	16,017
2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4,220
3	■■■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1,753
4	◆◆시 신혼희망타운	사업지연 피해 보상 요구	1,698
5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1,333
6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187
7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등 신고	953
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 반대	652
9	●●지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602
10	불법 의료광고	온라인 과대광고 등 신고	488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5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5월 4주차 민원은 379,486건(일평균 54,212건)으로 지난주(318,629건) 대비 19.1% 증가
- 지역별로는 강원(19.2%), 광주(15.5%) 증가, 울산(1.2%), 인천(2.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등 재정 분야 증가, ♪♪지구 고등학교 신설 요청 등 교육 분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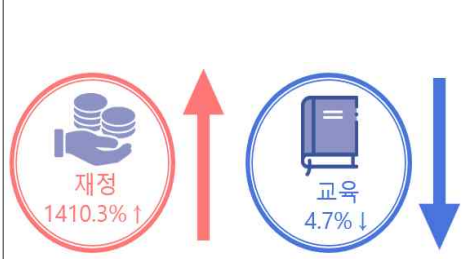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 지역별 증감 현황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심리상담 업무 직군 확대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요청 652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지는 ‘심리상담’을 다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직군까지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우려

- **검토요청** 근본적 대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전문성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수련을 거친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공공영역 채용 확대, 수련기관 확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 정신건강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정 편의적 개정 추진을 중단하시고,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5.18.)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표합니다. 심리상담은 자살위험, 외상, 정신증 등을 다루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이자 초고도 전문 영역입니다. 직역 간 기반 학문과 수련 체계가 엄연히 다름에도 학술적 검토 없이 이를 공통업무화하는 것은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5.18.)
- 심리상담은 우울, 불안, 자살위험, 외상, 정신증적 증상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전문 업무입니다. 충분한 심리학적 교육과 지도감독 수련 없이 공통업무로 허용될 경우, 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정신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성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수련을 받은 전문 인력의 공공영역 채용 확대, 처우 개선, 수련기관 확충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리상담 및 임상심리 수련 체계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5.20.)

▣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인더뉴스] “상담은 대화가 아니다”...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란

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 포함 추진
임상심리학회 “심리상담은 정신병리 치료·위기평가 결합된 전문업무” 반발

김종훈 기자 luky@inthenews.co.kr

등록 2026.05.21 17:38:54



▲ 일러스트 : 제이마리

인더뉴스 김용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성과 내담자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더뉴스(‘26.5.21.)

전문성 vs 접근성...정부 ‘심리상담 개편안’에 임상심리업계 불났다

경기=김현수 기자, 경기=이민호 기자

2026.05.21 14:0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 재조정 추진. 현장선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 확대해야”



머니투데이(‘26.5.21.)

‘심리상담 공통업무’ 추진에 임상심리계 “상담 전문성 훼손” 반발

A 공인영 기자

© 승인 2026.05.19 16:48

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심리상담’ 확대 추진

임상심리학회 “자살위험 평가 실패 등 국민 안전 문제 우려”



투데이신문(‘26.5.19.)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16,017건]**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관련 구제 방법 문의

- 저는 3월에 성과상여금(연 1회 지급)이 지급되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평달에는 2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 1회 일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20.)
-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3월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상시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이지만 3월에 성과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다른 달과는 다르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가 안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21.)
- 저희 가족 4명은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성인이지만 한 명은 취준생이라 직업이 없고, 두 아이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원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4명 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묶어 버리니 저소득층이 상위30%에 속해버렸습니다. 힘든 시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5.20.)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 및 교원 보호 대책 마련 요청[205건]**

○ 교육공동체(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 및 동의 관련 조항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책임 부담 등 우려

-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한 국가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이며, 이를 기획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집단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전문성보다 학부모 동의율이라는 수요자 중심적 지표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권의 침해입니다.(5.19.)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감독 의무와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하면서 결정 권한은 학부모 동의율에 있습니다. 향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법적·행정적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5.20.)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심리상담 업무 직군 확대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요청	1AA-2605-0737716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